

# 일본 공휴일 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사회문화적 함의

김용의\*  
yukim@jnu.ac.kr

## <目次>

- |                              |                             |
|------------------------------|-----------------------------|
| 1. 시작하며                      | 4. '국민축일(國民の祝日)'의 선정과정 및 사회 |
| 2. 국민국가 일본의 '휴일(休日)'의 역사적 성립 | 문화적 특징                      |
| 3. '휴일(休日)'에서 '축일(祝日)'로의 이행  | 5. 마치며                      |

主題語: 일본의 축일(Japanese Regal Public Holidays), 국민국가(nation state), 황실제사(court memorial service), 천황(Japanese emperor), 여론조사(opinion survey)

## 1. 시작하며

일본에서는 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3호에 의해 새로운 공휴일이 생겨났다.<sup>1)</sup> 이른바 '산의 날(山の日)'이라 부르는 공휴일로 매년 8월 11일로 지정되었다. 이 공휴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일본에는 '바다의 날(海の日)'이라는 공휴일도 존재한다. 한국인이 볼 때에 '산의 날'이나 '바다의 날'은 익숙하지 않은 공휴일임에 분명하다. 공휴일의 명칭이 어쩐지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공휴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고, 역사적으로 일본의 공휴일 제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성립하였는지, 한국의 공휴일과 비교하면 어떤 사회문화적 함의가 담겨있는지 한일비교문화론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이 분야 연구의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1)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국경일'이나 '공휴일'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0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13155호)에 의거한다. 일본에서는 <휴일에 관한 건(休日=関スル件)>(1912년 칙령 제19호)에서 '휴일(休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현행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國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에서는 '국민축일(國民の祝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특정한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인 용어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공적인 휴일'이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경우에는 '공휴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장주근은 이른바 세시풍속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한중일 삼국의 공휴일을 비교하였다.<sup>2)</sup> 장주근의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공휴일을 통한 비교문화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남식은 일제강점기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일본의 공휴일이 한국의 전통적인 세시풍속과 얼마나 이질적이었는가를 지적하였다.<sup>3)</sup> 김용의는 일본 공휴일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다.<sup>4)</sup>

일본에서는 일찍이 축제일(祝祭日)의 역사적 의미 및 의례와의 관련성,<sup>5)</sup> 그리고 1948년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國民の祝日に関する法律)>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 경위 및 의의를 확인하는 성격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들 연구는 공휴일(국민축일)의 역사적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홍보용 성격의 연구에 가깝다.<sup>6)</sup> 이와 같은 일본에서의 연구사적 경향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7)</sup>

이들 선행연구와는 다른 비판적인 관점에서 공휴일을 다룬 연구로는 역사학자 마키하라 노리오(牧原憲夫)가 메이지 시대 천황의 순행(巡幸)이 당시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휴일(축제일)에 관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한 정도이다.<sup>8)</sup>

일본의 공휴일 제도는 애초에 그 성립과정에서 사회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성립과 사회문화적 특징이라는 맥락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9)</sup>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휴일에 관해서 규정한 법령인 <휴일에 관한 건(休日ニ関スル件)>, 전후인 1948년에 제정된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에서 현행 공휴일이 성립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그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2) 장주근(1986)「한중일 삼국의 국정공휴일 비교」『한국민속논고』계몽사, pp.453-469

3) 이남식(1999)「초하루 보름 관행에서 평일·주말의 시간문화로」『민속문화의 수용과 변용』집문당, pp.65-91

4) 김용의(2000)「일본 『국민축일』의 기원과 변천과정」『일본문화학보』제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343-356

5) 여기서 말하는 ‘축제일(祝祭日)’이란 ‘축일(祝日)’과 ‘제일(祭日)’을 합한 의미에서의 축제일이다.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후에 이 축제일에서 제일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축일만이라는 용어만이 법령의 명칭으로 사용되기에 이른다.

6)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들 수 있겠다. 이 중에서 小林巖雄(1944)는 小林巖雄(1943)에 참고자료를 약간 보충한 것으로 거의 같은 구성이다. 內藤堯(1931)『各國國旗の由來と國祭日』同文館, pp.7-318, 八束清貫(1933)『祭日祝祭謹話』内外書籍株式會社, 教育總監部(1938)『祝祭日に就て』成武堂, pp.9-320, 小林巖雄(1943)『祝祭日の意義と祭典・儀式』文部省教學局, pp.1-123, 小林巖雄(1944)『祝祭日の本義』明世堂書店, pp.1-181, 受田新吉(1948)『日本の新しい祝日』日本教職員組合出版部, pp.1-210

7) 예를 들면 다음 연구에서 이 같은 경향이 확인된다. 産經新聞取材班(2001)『祝祭日の研究』角川書店, pp.11-214. 日本の祝祭日を考える会編(1994)『日本の祝祭日を考える』展轉社, pp.4-82

8) 牧原憲夫(2004)「巡幸と祝祭日」『明治維新と文明開化』吉川弘文館, pp.153-155

9) 예를 들어 김용의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공휴일에서 천황가의 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김용의(2000), 앞의 논문, pp.347-350

공휴일과의 비교문화론적 관점에서 일본 공휴일의 특징을 주목하고자 한다.

## 2. 국민국가 일본의 ‘휴일(休日)’의 역사적 성립

일본에서는 1873년 태정관(太政官) 포고로 <연중 제일축일의 휴기일을 정함(年中祭日祝日ノ休暇日ヲ定ム)>이라는 법령을 통해서 근대적 공휴일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후 1912년 칙령 제19호로 <휴일에 관한 건>이 제정되었다. 이 <휴일에 관한 건>은 1927년 칙령 제25호로 개정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현행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직전에 시행된 법령이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sup>10)</sup>

<표 1>은 필자가 1912년에 제정된 <휴일에 관한 건>과 1927년에 개정된 <휴일에 관한 건>을 대조하여 작성한 표이다.<sup>11)</sup>

먼저 전자 쪽을 검토하기로 한다. 칙령 제19호의 규정에 “왼쪽의 제일 및 축일을 휴일로 삼는다(左ノ祭日及祝日ヲ休日トス).”라는 조문에 나와 있듯이,<sup>12)</sup> 이 시기의 공휴일이란 먼저 제일(祭日)과 축일(祝日)로 양분되어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기에 공휴일이란 제일과 축일 양쪽을 아우르는 의미에서 ‘휴일(休日)’이라는 명칭이 통용되었다.

우선 제일(祭日)에 속하는 공휴일에는 원시제(元始祭, 1월 3일), 진무천황제(神武天皇祭, 4월 3일), 메이지천황제(明治天皇祭, 7월 30일), 간나메사이(神嘗祭, 10월 17일), 니나메사이(新嘗祭, 11월 23일),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 春分日),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 秋分日) 등이 해당된다.<sup>13)</sup> 축일(祭日)에 속하는 공휴일에는 신년연회(新年宴会, 1월 5일), 기원절(紀元節, 2월 11일), 천장절(天長節, 8월 31일), 천장절축일(天長節祝日, 10월 31일) 등이 있다.<sup>14)</sup>

그런데 <휴일에 관한 건>에 제일 또는 축일이라는 명목으로 지정한 공휴일은 그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전의 왕실제사를 계승하였다. 예를 들면 1908년 <황실제사령(皇室祭祀令)>에서

10) 이들 법령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법령의 개정과정에서 드러난 논점 및 담론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11) <표 1>의 작성을 위해서 일본의 官報 제51호(1927년 3월 4일 내각인쇄국 발행)를 참고하였다. 官報 第51號, p.1

12) 관련 문구는 일본의 官報 제51호(1927년 3월 4일 내각인쇄국 발행)에서 확인하였다. 官報 第51號, p.1

13) 이들 공휴일의 성격 및 내용에 관해서는 김용의의 다음 논문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한다. 김용의(2000), 앞의 논문, pp.347-348. 더욱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조. 八東清貫(1933), 앞의 책, pp.46-153. 小林巖雄(1943), 앞의 책, pp.20-69

14) 이들 축일의 내용 및 당일 행해지는 의례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小林巖雄(1944), 앞의 책, pp.73-93

정한 천황가의 제사가 그대로 공휴일로 수용되었다.

<황실제사령>은 1908년(메이지 41년) 9월 19일 황실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전 3장 26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초로 왕실제사를 체계화하여 정비한 법령이다. 제1장 총칙 제2조에서 대제(大祭)와 소제(小祭)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제2장 제9조에 대제의 종류 및 그 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3장 제21조에 소제 및 그 기일을 정하고 있다.<sup>15)</sup> 이 시기에 <황실제사령>이라는 법령을 통해서 천황이 주재하는 왕실제사의 종류 및 기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천황의 왕권 강화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사대권(祭祀大權)을 명문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sup>16)</sup>

<황실제사령>을 보면, 대제(大祭)로 원시제(元始祭, 1월 3일), 기원절제(紀元節祭, 2월 11일), 춘계황령제(春季皇靈祭, 春分日), 춘계신전제(春季神殿祭, 春分日), 신무천황제(神武天皇祭, 4월 3일), 추계황령제(秋季皇靈祭, 秋分日), 추계신전제(秋季神殿祭, 秋分日), 간나메사이(神嘗祭, 10월 17일), 니나메사이(新嘗祭,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선제제(先帝祭, 매년 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선제 이전 삼대의 식년제(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선후의 식년제(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황비(皇妣)인 황후의 식년제(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등을 거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제(小祭)에 세단제(歲旦祭, 1월 1일), 기년제(祈年祭, 2월 17일), 메이지절제(明治節祭, 11월 3일), 가시코도코로미카구라(賢所御神樂, 12월 중순), 천장절제(天長節祭, 매년 천황의 탄생일에 해당하는 날), 선제 이전 삼대의 예제(매년 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선후의 예제(매년 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황비(皇妣)인 황후의 예제(매년 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스이제이 천황(綏靖天皇) 이하 선제, 이전 4대에 이르는 역대 천황의 식년제(붕어일에 해당하는 날) 등이 열거되었다.

이들 <황실제사령>에 규정된 황실의 제사가 공휴일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말하자면 ‘천황가’라는 특정한 집안에 의미가 있던 제사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휴일’이라는 공휴일 제도를 통하여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로 외연이 확장된 셈이다.

다시 <표 1>을 주목하기로 한다. <표 1>에서 전자와 후자를 대조하면, 양쪽 모두 연중 공휴일의 횟수가 11회로 고정되어 있으며, 커다란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세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5) 본고에서 언급한 관련 조문의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朕皇室祭祀令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 第一章 總則 第二條 祭祀ハ大祭及小祭トス 第二章 大祭 第九條 大祭及其ノ期日ハ左ノ如シ 第三章 小祭 第二十一條 小祭及其ノ期日ハ左ノ如シ  
다음 논저에 대제와 소제에 대한 관련 해설이 기술되어 있다. 村上重良(1977)『天皇の祭祀』岩波新書, pp.157-161

16) 천황의 제사대권(祭祀大權)에 관해서는 다음 논저를 참고. 村上重良(1977), 앞의 책, p.157

첫째 메이지천황제(7월 30일)가 폐지되고 메이지절(11월 3일)이 새로 제정되었다. 이는 전자의 법령이 다이쇼(大正) 천황 시대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직전 천황에 해당하는 메이지 천황의 제일을 정하여 시행했기 때문이다. 쇼와 천황 시대에 후자의 법령이 제정되자, 직전 천황인 다이쇼 천황을 제사지내기 위한 다이쇼천황제(12월 25)를 신설하고, 대신에 메이지천황제(7월 30일)를 메이지절(11월 3일)로 바꾸었던 것이다.

둘째 전자에서 존재했던 천장절축일(10월 31일)이 후자에서는 폐지되었다. 전자의 경우, 다이쇼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8월 31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에 따로 천장절축일(10월 31일)이란 명칭으로 공휴일을 정하였다. 이는 다이쇼 천황이 태어난 8월 31일이 염서(炎書)이기 때문에 생일 이외에 따로 공휴일을 정해서 배하(拜賀) 및 연회를 행할 수 있도록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sup>17)</sup> 후자의 경우에는 천장절이 4월 29일이기 때문인지 천장절 축일이 폐지되었다.

<표 1> <휴일에 관한 건>(1912)과 개정 <휴일에 관한 건>(1927)의 대조

	휴일에 관한 건(1912)	휴일에 관한 건(1927)
공휴일의 명칭 및 날짜	元始祭 1월 3일	元始祭 1월 3일
	新年宴会 1월 5일	新年宴会 1월 5일
	紀元節 2월 11일	紀元節 2월 11일
	神武天皇祭 4월 3일	神武天皇祭 4월 3일
	明治天皇祭 7월 30일	
	天長節 8월 31일	天長節 4월 29일
	天長節祝日 10월 31일	
	神嘗祭 10월 17일	神嘗祭 10월 17일
		明治節 11월 3일
	新嘗祭 11월 23일	新嘗祭 11월 23일
		大正天皇祭 12월 25일
	春季皇靈祭 春分日	春季皇靈祭 春分日
秋季皇靈祭 秋分日	秋季皇靈祭 秋分日	

### 3. ‘휴일(休日)’에서 ‘축일(祝日)’로의 이행

현행 일본의 공휴일은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었다.

17)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小林巖雄(1944), 앞의 책, p.7

앞서 검토한 <휴일에 관한 건>(1927)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그 효력을 상실하고 폐지되었다. 이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은 1948년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표 2>는 필자가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sup>18)</sup>에 정해진 공휴일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표 3>은 <휴일에 관한 건>(1912) 및 <휴일에 관한 건>(1927), 그리고 <축일에 관한 법률>(1948)을 대조하여 정리한 표이다. 이들 표를 통해서 확인하면, 연중 모두 11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앞서 <휴일에 관한 건>(1927)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비해서 이들이 늘어났다. 그 명칭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법률 조문에 규정된 공휴일의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언뜻 파악하기 어려운 공휴일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하자면, <휴일에 관한 건>(1927)에 지정된 공휴일과 비교할 때에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다.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표 2>와 같은 공휴일이 선정되었는지, ‘전후’라는 시대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표 2>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에 정해진 국민축일

공휴일의 명칭 및 날짜	내용
설(元日, 1월 1일)	새해가 시작됨을 축하한다.
성인의 날 (成人の日, 1월 15일)	어른이 된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청년을 축복하고 격려한다.
천황탄생일 (天皇誕生日, 4월 29일)	천황의 탄생일을 축복한다.
헌법기념일 (憲法記念日, 5월 3일)	일본국 헌법의 시행을 기념하며 나라의 성장을 꾀한다.
어린이날 (こどもの日, 5월 5일)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하며 어린이의 행복을 꾀함과 동시에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문화의 날 (文化の日, 11월 3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권장한다.
근로감사의 날 (勤労感謝の日, 11월 23일)	근로를 존중하고 생산을 축복하며 국민 서로가 감사해 한다.

18) 이 법령 제2조의 일본어 원문을 적어둔다. 일본의 官報 第6453號(1948년 7월 20일 발행) p.1 참조 第二条「国民の祝日」を次のように定める。元日 一月一日 年のはじめを祝う。成人の日 一月十五日おとなになったことを自覚し、みずから生き抜こうとする青年を祝いあげます。春分の日 春分日 自然をたたえ、生物をいつくしむ。天皇誕生日 四月二十九日 自然に親しむとともにその恩恵に感謝し、豊かな心をはぐくむ。憲法記念日 五月三日 日本国憲法の施行を記念し、国の成長を期する。こどもの日 五月五日 こどもの人格を重んじ、こどもの幸福をはかるとともに、母に感謝する。秋分の日 秋分日 祖先をうやまい、なくなった人をしのぶ。文化の日 十一月三日 自由と平和を愛し、文化をすすめる。勤労感謝の日 十一月二十三日 勤労をたつとび、生産を祝い、国民たがいに感謝しあう。

춘분의 날 (春分の日, 春分日)	자연을 칭송하고 생물을 사랑한다.
추분의 날 (秋分の日, 秋分日)	선조를 공경하고 죽은 사람들을 추모한다.

<표 3> <휴일에 관한 건>과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의 대조

	휴일에 관한 건 (1912)	휴일에 관한 건 (1927)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
<b>공휴일의 명칭 및 날짜</b>	元始祭 1월 3일	元始祭 1월 3일	元日 1월 1일
	新年宴会 1월 5일	新年宴会 1월 5일	
			成人の日 1월 15일
	紀元節 2월 11일	紀元節 2월 11일	
	神武天皇祭 4월 3일	神武天皇祭 4월 3일	
	明治天皇祭 7월 30일		
	天長節 8월 31일	天長節 4월 29일	天皇誕生日 4월 29일
			(憲法記念日 5월 3일)
			こどもの日 5월 5일
	神嘗祭 10월 17일	神嘗祭 10월 17일	
	天長節祝日 10월 31일		
		明治節 11월 3일	文化の日 11월 3일
	新嘗祭 11월 23일	新嘗祭 11월 23일	勤労感謝の日 11월 23일
		大正天皇祭 12월 25일	
	春季皇靈祭 春分日	春季皇靈祭 春分日	春分の日 春分日
秋季皇靈祭 秋分日	秋季皇靈祭 秋分日	秋分の日 秋分日	

일본에서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이 제정되기까지 관련 법률의 명칭, 해당 공휴일의 선정 및 날짜 지정, 그리고 공휴일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및 심의가 진행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 1948년 1월 하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총리청관방심의실(總理廳官房審議室) 여론조사반에 의해 실시된 ‘축제일에 관한 여론조사(祝祭日に關する世論調査)’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한다.<sup>19)</sup> 그리고 중의원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법률의 제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우케다 신키치(受田新吉)가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정리한 보고서 성격의 논저인 『일본의 새로운 축일(日本の新しい祝日)』에도 당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sup>20)</sup>

19) 여론조사반 이외에도 중의원조사부와 참의원조사부가 함께 여론조사에 참여하였다. 總理廳官房審議室 (1948)『祝祭日に關する世論調査』總理廳官房審議室, pp.3-48

20) 저서에 기술된 저자 受田新吉의 악력을 간략하게 적어놓는다. 1910년 야마구치 현(山口縣) 오시마 군(大

먼저 관련 법률의 명칭이다. 어떤 경위에서 <휴일에 관한 건>에서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로 법률 명칭이 바뀌었는지, 다시 말하자면 ‘휴일(休日)’에서 ‘축일(祝日)’로 이행된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내용적으로 볼 때에, ‘휴일(休日)’을 구성하는 제일 및 축일(祭日及祝日)에서 제일이 탈락하고 축일이라는 명칭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이 점에 관해서 우케다 신키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심의과정에서 특히 논점으로 거론된 것은 앞서 기술한 축일(祝日)과 휴일(休日)의 관계 이외에 명칭과 행사였다. 명칭에 관해서는 ‘축제(祝祭)’라든가 ‘절(節)’이라는 말이 황실이나 국가신도에서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공휴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를 피하고자 하는 여론이 유력했다. 거듭된 토론의 결과, 새로운 공휴일에서는 절(節)이나 제(祭)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아홉 가지 공휴일 어느 것이나 ‘일(日)’로 통일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 자체의 명칭은 애초에 ‘국민의 날(國民の日)’과 ‘국민축일(國民の祝日)’이라는 두 안이 있었다. 전자는 신감각적이고 후자는 대중적이라는 비판도 있어서 토의하였지만, 국민대중이 거국적으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국민축일’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에 ‘축(祝)’ 자에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신헌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국민 스스로가 축하하는 날로서 새롭게 발족하였다.<sup>22)</sup>

우케다 신키치의 문장에는 전후의 당시 일본사회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어서 흥미롭다.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전후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가급적 ‘황실이나 국가신도에서 사용된 말’을 피하고자 고심한 결과 절(節)이나 제(祭)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日)’로 통일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이전에 시행되었던 <휴일에 관한 건>에 지정된 공휴일이 압도적으로 천황 및 천황가의 제사와 관련된 날로 채워졌던 점을 염려한 결과이다. 그 때문에 천황 및 천황가의 제사를 연상시키는 절(節)이나 제(祭)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日)’로 통일하여 ‘축일(祝日)’이라는 명칭의 공휴일이 탄생했던 것이다.

---

島郡)에서 태어났다. 야마구치 현에 소재한 사가 중학교 교장 재임 중인 1947년 4월에 중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문화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에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의 제정에 관여하였다.

21) 이 점에 관해서는 본고 2장에서 언급한 <휴일에 관한 건>의 “왼쪽의 제일 및 축일을 휴일로 삼는다(左ノ祭日及祝日ヲ休日トス)”라는 조문을 참조.

22) 受田新吉(1948), 앞의 책, p.47

## 4. ‘국민축일(国民の祝日)’의 선정과정 및 사회문화적 특징

새로 제정된 ‘국민축일(国民の祝日)’에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당초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휴일로 선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서 다시 앞의 <표 2> 및 <표 3>을 참고하기로 한다. 표를 보면 구체적으로 설(元日, 1월 1일), 성인의 날(成人の日, 1월 15일),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 4월 29일),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 5월 3일), 어린이날(こどもの日, 5월 5일), 문화의 날(文化の日, 11월 3일), 근로감사의 날(勤労感謝の日, 11월 23일), 춘분의 날(春分の日, 春分日), 추분의 날(秋分の日, 秋分日) 등이 국민축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앞서 제3장에서 소개한 ‘축제일에 관한 여론조사’의 보고서를 보면, 전체 30개 항목에 이르는 공휴일 후보일을 조사 대상자들에게 제시하여 그 중에서 공휴일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sup>23)</sup> 그 30개 항목에 이르는 공휴일 후보일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신년(新年), 나나구사(七草), 세쓰분(節分), 건국기념일(建国の記念日), 히나마쓰리(ひな祭),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날(母に感謝する日), 춘분(春分, 彼岸の中日), 어린이 축제(子供のお祭), 식물 애호의 날(植物愛護の日), 히나마쓰리(花祭, おしゃか様の生れた日), 부인의 날(婦人の日, 婦人が初めて選挙した日), 천황탄생일(天皇陛下のお生れになった日), 메이데이(労働運動の国際的記念日, 메이デー), 신헌법 시행일(新憲法施行の日), 단오(たんごの節句), 동물 애호의 날(動物愛護の日), 다나바타(七夕), 오본(お盆),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추도하는 날(国のためになくなった人々を追憶する日), 중앙(菊の節句), 추분(秋分彼岸の中日), 신헌법 공포일(新憲法公布の日), 메이지시대를 기념하는 날(明治時代を記念する日), 시치고산 축하(七五三のお祝), 햇곡식에 감사하는 날(新穀に感謝する日), 크리스마스(国際親善の日, 크리스마스), 체육제(体育祭), 예술제(芸術祭), 문화제(文化祭), 평화를 기념하는 날(平和を記念する日) 등이다.

이들 항목을 보면 이른바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날(母に感謝する日), 어린이 축제(子供のお祭), 부인의 날(婦人の日) 등과 같이 특정한 사람들에 한정되는 날도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표 4>는 필자가 1948년 공휴일(축제일) 지정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지지를

23) 조사방법은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30개 후보일 항목 중에서 임의로 12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6,160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조사표 기입을 병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6,097개의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總理廳官房審議室(1948), 앞의 책, pp.3-10

받은 후보일을 순위에 따라서 15위까지 정리한 결과이다.<sup>24)</sup>

<표 4>를 앞서 정리한 <표 2> 및 <표 3>과 대조해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공휴일 선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상위에 오른 모두 15개 항목에 이르는 공휴일 후보일 중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경우는 설(元日, 1월 1일), 천황탄생일(天皇誕生日, 4월 29일),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 5월 3일), 춘분의 날(春分の日, 春分日), 추분의 날(秋分の日, 秋分日), 근로감사의 날(勤勞感謝の日, 11월 23일) 등이다.

이 중에서 헌법기념일(憲法記念日)은 <표 4>의 신헌법 시행일(新憲法施行の日) 및 신헌법 공포일(新憲法公布の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감사의 날(勤勞感謝の日)은 햇곡식에 감사하는 날(新穀に感謝する日)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겠다.<sup>25)</sup>

<표 4> 1948년에 실시한 축제일 지정 여론조사 결과

순위	축제일	획득한표	비율(%)	공휴일 지정여부
1	신년(新年)	6,094	99.9	지정
2	천황탄생일 (天皇陛下のお生れになった日)	5,285	86.7	지정
3	건국기념일(建国の記念日)	4,958	81.3	
4	오분(お盆)	4,884	80.1	
5	평화를 기념하는 날(平和を記念する日)	4,387	71.8	
6	춘분(春分, 彼岸の中日)	4,055	66.5	지정
7	추분(秋分, 彼岸の中日)	4,042	66.3	지정
8	햇곡식에 감사하는 날 (新穀に感謝する日)	3,901	63.9	반영
9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날 (国のためになくなった人々を追憶する日)	3,644	59.8	
10	크리스마스(国際親善の日, クリスマス)	3,423	56.1	
11	히나마쓰리(ひな祭)	2,689	44.1	
12	신헌법 시행일(新憲法施行の日)	2,662	43.7	반영
13	신헌법 공포일(新憲法公布の日)	2,457	40.3	반영
14	메이지시대를 기념하는 날 (明治時代を記念する日)	2,456	40.3	
15	단오(たんごの節句)	2,421	39.5	

24) 總理廳官房審議室(1948)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자가 공휴일 지정 여부를 보충하여 표로 작성하였다. 總理廳官房審議室(1948), 앞의 책, pp.19-21

25)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 공휴일로 지정된 근로감사의 날(勤勞感謝の日, 11월 23일)은 <휴일에 관한 건>에서 新嘗祭(11월 23일)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 4>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지정된 공휴일을 검토해 보면, 특히 한국의 공휴일과 비교할 때에 세 가지 두드러진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첫째 비록 공휴일의 명칭을 바꾸기는 하였지만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천황 및 천황가의 제사에 기원을 둔 공휴일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의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거의 공휴일에 반영되지 않았다. 셋째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과 같은 종교적 성격의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세 가지 점은 현행 일본 공휴일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특징에 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으므로,<sup>26)</sup> 본고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공휴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검토이다. <표 4>를 보면 15위 안에 신년(新年), 오본(お盆), 히나마쓰리(ひな祭), 단오(たんごの節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연중행사는 현재도 일본에서 그 실시율이 매우 높은 연중행사이다.<sup>2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에 설(元日, 1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일 지정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신년(新年) 즉, 연중행사로서의 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연중행사로서의 설을 반영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휴일에 관한 건>(1912, 1927)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원시제(1월 3일) 및 신년연회(1월 5일)와의 연속성이 감지된다.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의 심의과정에서 민간에서 실시율이 높은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공휴일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국민축일을 심의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침 및 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우케다 신키치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국민축일을 심의하기 위해서 첫째 신헌법의 정신에 즉하여 평화일본 문화일본 건설의 의의에 합치할 것, 둘째 국민 전체가 거국적으로 참가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대 방침을 근간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 (1) 국가신도에서 유래하고 국민생활과 관계가 적은 것은 배제한다.
- (2) 역사적 근거가 적은 경우는 재검토한다.
- (3) 단체적인 것, 지방적인 것은 제이의적(第二義的)으로 고려한다.
- (4) 국민의 생활감정을 중시하고, 신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통을 존중한다.

26) 다음 논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김용의(2000), 앞의 논문, pp.347-350

27) 예를 들면 현대 일본가정의 연중행사 실시율을 조사한 井上忠司의 연구를 참조. 이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인 연중행사 중에서도 특히 오본(お盆), 히나마쓰리(ひな祭)의 실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井上忠司(1993)『現代家庭の年中行事』講談社, p.216

- (5)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도 문화국가에 어울리는 건설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새로 지정한다.
- (6) 계절이 지닌 의미를 존중한다.
- (7) 축제일 전체에 일관된 의미를 부여할 것, 즉 국가, 조상, 동포, 청년, 어린이 등, 국민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항목을 세운다.
- (8) 국제관계를 존중한다.<sup>28)</sup>

앞의 심의 기준 중에서 전통 연중행사의 공휴일 반영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당연히 (4)에 명기된 “전통을 존중한다.”라는 구절이다. 바로 앞에 “신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전통과 관련된 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한 방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 후보일 중에서 15위 안에 들어간 오본(お盆), 히나마쓰리(ひな祭), 단오(たんごの節句) 등이 배제되었다. 특히 당시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는 동안에 민간 연중행사를 정식으로 국민적 축제일에 넣기를 바란다는 청원까지 있었다.<sup>29)</sup> 이 같은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 연중행사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 중에서 일본 최대의 연중행사인 오본(お盆)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본(お盆)은 조상의 날로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추도하는 날로서, 7월 15일 또는 8월 15일을 유력하게 고려하였지만 결국 그 정신을 축일로서의 춘분 및 추분에 포함시켜, 오본 그 자체는 순수한 민간행사로 두기로 하였다.<sup>30)</sup>

앞의 설명에 의하면 당초 오본은 가장 유력한 공휴일 후보일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죽은 조상을 제사 지내는 오본의 정신을 춘분 및 추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오본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 춘분 및 추분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에 춘분 및 추분이 <휴일에 관한 건>에 춘계황령제 및 추계황령제라는 이름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간에서 널리 조상의 영혼을 제사지내는 날이라는 측면보다는, 천황가의 왕실제사였다는 점을 중시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던 것이다.

28) 이밖에도 (1)축제일 명칭은 가능한 한 쉬운 단어를 선택할 것, (2)축제일에 거행할 행사를 함께 고려할 것, (3)연중 축제일이 편중되지 않도록 분포할 것, (4)축제일 수가 너무 많지 않도록 할 것 등이 고려되었다. 受田新吉(1948), 앞의 책, pp.37-38

29) 受田新吉(1948), 앞의 책, pp.39-40

30) 受田新吉(1948), 앞의 책, p.51

이 점은 자칫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는 춘분 및 추분이 공휴일로 지정된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과거에는 ‘시정(時正)’이라고도 불렀던 춘분과 추분 양일, 그 날을 사이에 두고 전후 7일간 누구 묘지라고 할 것도 없이 일가의 묘지에 참배하러 다니는 풍습은 발달된 역법 지식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혹은 중국에서 들어온 풍습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를 ‘히간에(彼岸會)’ 날로 삼은 것은 불교 경전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한다. 마침 계절로 보나 농작업 관계로 보나 이 제사를 지내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정부에서도 이 민간의 관행을 인정하여 이를 ‘국민 축일(國民の祝日)’로 삼은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든든하다.<sup>31)</sup>

야나기타 구니오의 설명에 따른다면, 일본에서는 민간에서 춘분 및 추분에 조상의 영혼을 제사 지내는 풍습이 존재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 풍습을 존중하여 ‘국민 축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야나기타 구니오의 설명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춘분 및 추분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직접적인 계기는 춘계황령제 및 추계황령제라는 왕실제사에서 추구하는 쪽이 훨씬 빠르다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과 같은 종교적 성격의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대한 고찰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케다 신키치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다음 설명을 참고하기로 한다.

크리스마스는 또한 국제친선일로서 부디 국민축일에 포함시켜 국제간에 신뢰받는 국민으로 출발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불교단체로부터 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일부 종교적 행사를 국민 전체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에 의해 실현되지 않았다. 하나마쓰리(석가탄신일, 필자)도 같은 이유에서 채택되지 않았다.<sup>32)</sup>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채택되지 않은 이유는 우케다 신키치의 설명 그대로 일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차별이라는 반대여론을 반영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크리스마스과 관련해서는 앞서 열거한 8개 항목에 이르는 세부적인 법안 심의 기중 중에서 (8)번에 해당하는 ‘국제관계를 존중한다’라고 명시한 항목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표 4>를 참고하면, 법률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크리스마스를 ‘국제친선의 날, 크리

31) 柳田國男(2008)『先祖の話』石文社, p.76

32) 受田新吉(1948), 앞의 책, p.51

스마스(國際親善の日, クリスマス)'라고 이중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크리스마스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전체 30개 항목 중에서, 메이데이(労働運動の國際的記念日, メーデー)를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게 국제관계를 고려한 공휴일 후보일이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순위도 10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가 높았다. 그럼에도 결국 일본 국내의 종교적 갈등을 우려한 나머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일찍이 한국 사회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단지 일본의 경우와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이 공휴일에서 배제되지 않고 양쪽 모두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공휴일을 규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1990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13155호)이 처음 제정될 때에는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만이 공휴일에 포함되고 석가탄신일은 포함되지 않았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 개정에 즈음하여 비로소 공휴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 5. 마치며

일본의 공휴일 제도는 외국인이 보기에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한국인이 한국의 공휴일과 비교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서 오본과 같이 현재도 그 실시율이 높은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지,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과 같은 종교적 성격의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일 것이다.

본고는 앞의 여러 의문점에서 출발하여 한일비교문화론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공휴일의 역사적 성립 및 사회문화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첫째 <휴일에 관한 건>에서 지정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부터 행해오던 천황가의 왕실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는 1908년 <황실제사령(皇室祭祀令)>으로 정한 천황가의 제사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휴일에 관한 건>에서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로 관련 법령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 두드러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은 형행 공휴일 제도의 출발점이 된 법령이다. 일본에서는 이 법령의 제정에 즈음하여 법률의 명칭, 공휴일의 선정 및 날짜 지정, 그리고 공휴일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여론조사 및 심의가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1948년 1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이후 실제로 지정된 공휴일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천황 및 천황가의 왕실제사에 기원을 둔 공휴일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후보일로 거론되었지만 결국 이들 연중행사가 공휴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종교적 성격의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일본에서는 1873년 태정관(太政官) 포고로 <연중 제일축일의 휴가일을 정함(年中祭日祝日ノ休暇日ヲ定ム)>이 제정된 이래로, <휴일에 관한 건>을 거쳐 현행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공휴일 제도가 존재했다. 특히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물론 이들 법령에 정해진 개개의 공휴일에는 일본사회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함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이들 법적 공휴일 제도를 모두 시야에 넣고 통시적으로 그 변천과정, 그리고 그 사회문화적 배경 및 시대적 문맥을 분석하는 연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

**【參考文獻】**

김용의(2000)「일본『국민축일』의 기원과 변천과정」『일본문화학보』제8집, 한국일본문화학회  
 이남식(1999)「초하루 보름 관행에서 평일·주말의 시간문화로」『민속문화의 수용과 변용』집문당  
 장주근(1986)「한중일 삼국의 국정공휴일 비교」『한국민속논고』계몽사  
 井上忠司(1993)『現代家庭の年中行事』講談社  
 受田新吉(1948)『日本の新しい祝日』日本教職員組合出版部  
 小林巖雄(1943)『祝祭日の意義と祭典・儀式』文部省教學局  
 小林巖雄(1944)『祝祭日の本義』明世堂書店  
 教育總監部(1938)『祝祭日に就て』成武堂  
 産經新聞取材班(2001)『祝祭日の研究』角川書店  
 總理廳官房審議室(1948)『祝祭日に關する世論調査』總理廳官房審議室  
 内藤堯(1931)『各國國旗の由來と國祭日』同文館  
 日本の祝祭日を考える会編(1994)『日本の祝祭日を考える』展轉社  
 牧原憲夫(2004)「巡幸と祝祭日」『明治維新と文明開化』吉川弘文館  
 村上重良(1977)『天皇の祭祀』岩波新書  
 八東清貫(1933)『祭日祝祭謹話』内外書籍株式會社  
 柳田國男(2008)『先祖の話』石文社  
 官報 第51號(1927.3.4)  
 官報 第6453號(1948.7.20)

---

논문투고일 : 2015년 12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12월 20일  
 1차 수정일 : 2016년 0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6년 0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01월 19일

---

---

 <要旨>
 

---

### 일본 공휴일 제도의 역사적 성립과 사회문화적 함의

본고는 한일비교문화론이라는 관점에서 <휴일에 관한 건> 및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이라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일본 공휴일의 역사적 성립 및 사회문화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들 법령에 정해진 개개의 공휴일에는 일본사회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함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휴일에 관한 건>에서 지정한 대부분의 공휴일은 물론이고 현행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에도 근대 이전부터 행해오던 천황가의 왕실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휴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1908년 <황실제사령(皇室祭祀令)>으로 정한 천황가의 제사와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 <국민축일에 관한 법률>(1948)의 제정에 즈음하여 법률의 명칭, 공휴일의 선정 및 날짜 지정, 그리고 공휴일의 명칭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여론조사 및 심의가 진행되었다. 1948년 1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이후 실제로 지정된 공휴일을 면밀히 대조한 결과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행 공휴일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천황 및 천황가의 왕실제사에 기원을 둔 공휴일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 전통적인 연중행사가 후보일로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이들 연중행사가 공휴일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종교적 성격의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회문화적 배경 및 시대적 문맥을 분석하였다.

### The Historic Establishment and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Regal Public Holidays System

This paper aimed to examine the historic establishment and the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Regal Public holiday system in the aspect of the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cultures. First, reviewing <the matters of holidays>, it was revealed that most of the holidays designated by this legislation have followed the Japanese emperor family's court memorial service that have been performed before the modern times.

Next, <the act about the national feast days>(1948) newly established after the war was also reviewed. Especially, the process of finally selecting the national holidays designated by this legislation was considered. For this, the results of the public opinion poll in 1948 were compared with the actual national holidays designated since then. In the results, it revealed several outstanding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of Japanese national holidays.

First, even though the names of national holidays have been changed, there are overwhelmingly lots of national holiday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emperor family's court memorial service. Second, such many traditional annual events proposed for the national holidays have not been actually reflected to them. Third, there is no holiday showing the religious nature such as Christmas or Buddha's Birthday.